

# 예비비 사용 보고

2021. 3.

지역발전본부

#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보고

## □ 사업목적

- 여가 수요 증가와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시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 도모를 위하여 북한산과 주변 역사·문화·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가족캠핑장 조성

## □ 사업개요

- 위 치: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
- 규 모: 11,561  $m^2$
- 사업기간: '16. 8. ~ '21.12.
- 총사업비: 16,660백만원
- 사업내용: 캠핑장(31면), 다목적 잔디광장,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(32명) 등



## □ 보상 관련 추진경위

- '16. 8.29. 우이동 가족캠핑장조성 사업계획 수립
- '18. 7.~'19.10. 토지주 면담 등 보상절차 진행
- '18.10.18. 보상계획 공고(12.21. 감정평가 완료)
- '19. 6.11.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
- '19. 7.10.~25.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
- '19.11. 7.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(결과:보류)
- '19.12. 5.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재심의(결과:통과)
- '20. 1.22.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(김\*\* 외 10명)
- '20. 1.28. 토지보상금 공탁
- '20. 1.29. 토지수용 개시 및 소유권 이전
- '20. 9.24.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심의
- '20.11.10. 이의재결 증액 보상금 공탁(314백만원)

## □ 이의재결 개요

- 사 건 번 호: 190이중0578호
- 사 업 명: 도시계획시설사업(우이동 가족캠핑장조성 공사)
- 이의신청인: 김\*\* 외 10명
-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
- 재 결 일: '20.9.24.
- 이의신청 사유
  - 서울시는 우이동 가족캠핑장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우이동 316 외 5필지 토지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'19.6.11.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며,
  - 김\*\*외 10명은 '19.12.5.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'20.1.22. 이의 신청을 하였음

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(이의의 신청) 〉

-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이의의 신청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-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 사항('20.9.24.)
  - 토지에 대한 보상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,
  - 그 토지의 이용계획, 지가변동률, 물가상승률, 해당 토지의 위치·형상·환경·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
  -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적정하게 정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다시 감정평가하고 보상금을 재산정한 결과 손실보상금 금11,059,108,530원을 금11,373,072,090원으로 변경 결정(증 313,963,560원)

## □ '20년 예비비 사용내역

○ 소요예산 : 313,964천원

-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
(단위 : 천원)

구분 (부서)	예산과목		당초 예산액	예비비 사용승인액		사용승인 후 예산현액	승인일자
	세부사업명	통계목		증	감		
				동북권 사업과	우이동 가족캠핑장조성 (일반회계)		

### 〈예비비 사용 사유〉

- 우이동 가족캠핑장 토지보상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 우이동 316 외 5필지에 대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 지급이 불가피 하였음.
- '20년도 예산 편성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 예측 곤란 등으로 별도 확보된 예산이 없었고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에 따른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어,
- 본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음.

※ 예비비 사용경위

- ▶ '20.10.29. 중토위 이의재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 방침(지역발전본부장)
- ▶ '20.10.29. 예비비 사용 승인 요청(동북권사업과→예산담당관)
- ▶ '20.11. 4. 예비비 사용 승인(예산담당관)
- ▶ '20.10.29. 예비비 재배정(동북권사업과→강북구 공원녹지과)
- ▶ '20.11.10. 예비비 집행(강북구 공원녹지과)

## □ 추진일정

- '21. 3.        **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 완료 공고, 재산관리관 이관(동북권사업과→공원조성과)**
- '21. 4.        **가족캠핑장 개관·운영(예정)**